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이 병 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방법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둘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을 세분화하며,

셋째,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하고 감사실시방법등을 명시하며,

네째, 의회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증인과 증언에 관한 조항 신설

여섯째,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규정 신설

일곱째,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조항 신설

여덟째,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선서를 신설하기 위한것입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